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7. 17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손범구 의원 등 6명(이진환, 박종길, 권숙자, 이영빈, 임미연)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7. 17.)

2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범위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를 예방하고,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의 검수범위 확대(안 제5조)
 -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→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→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주택법」 제48조의3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5. 7. 4.~7. 14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범위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발생과 품질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공동주택 내 하자 및 품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 안전 확보 및 하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련 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